의정활동 보고서

제191회 임시회(2004. 8.31~9.13)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남효채 행정부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검게 탄 건강한 얼굴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난 태풍 "메기"에 전국적으로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과 농가에 위로의 말씀과 함께 빠른 복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한 세계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9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려 국위를 크게 선양하였습니다.

"하면 된다"는 불굴의 투지를 태운 선수와 임원 그리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응원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도 출신 선수와 임원들에게 무한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7대 의회 후반기에도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단합되고 성숙된 의회를 만들어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여 민의의 대변기구로 우뚝 자리 매김 합시다.

부덕한 본의원이 의장으로서의 권위는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책의회, 열린의회, 도민과 함께 하는 민주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도정질문 및 업무보고청취 등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8. 31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哲 雨

차 례

Ⅰ. 개 황 ····· 6

Ⅱ. 의사 일정 ····· 7

1. 소 집 ····· 7

2. 회 기 ····· 7

3. 활 동 ····· 8

가. 본회의 ····· 8

나. 상임위원회 ····· 9

Ⅲ. 의안 처리 ····· 13

1. 본회의 ····· 13

2. 상임위원회 ····· 14

Ⅳ. 민원 처리 ····· 15

1. 청 원 ····· 15

2. 진 정 ····· 15

가. 접 수 ····· 15
나. 처 리 ····· 16

Ⅴ. 본회의 보고사항 ····· 17

1. 의안접수 사항 ····· 17
2. 조례공포 사항 ····· 18
3.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 18
4. 기타 사항 ····· 18

Ⅵ. 도정질문(제2차 본회의 ; 2004. 9. 1) ····· 22

1. 산업관광위원회 김정기의원 ····· 22
2. 건설소방위원회 윤경희의원 ····· 33
   - 보충질문 ····· 40
3. 기획위원회 정무웅의원 ····· 42
4. 교육환경위원회 박종욱의원 ····· 50
5. 산업관광위원회 박드필의원 ····· 56

Ⅶ. 5분 자유발언(제3차 본회의 ; 2004. 9.13) ··· 63

1. 기획위원회 권종연의원 ····· 63

부 록

□ 조 례 안 ····· 67

1.경상북도주민특표조례안 ····· 69
2.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7
3.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95
4.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97
5.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103

□ 동 의 안 ····· 110

1.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11

□ 건 의 안 ····· 117

1.「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시한연장대정부건의안 ····· 118
2.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 ····· 126

□ 결 의 안 ····· 132

1.태권도공원경주유치결의안 ····· 133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36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91회 임시회는 2004년 8월31일 개회하여 9월13일까지 14일간의 회기동안 본회의 3차, 8개 상임위 회의 13차를 개최하였고 안동시외 7개 시·군의 기관 및 시설, 사업장도 현장 확인하였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제1차 본회의는 8월31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제191회경상북도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을 의결하였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 (김정기·윤경희·정무웅·박종욱·박두필의원)」을 하고 9월 2일부터 동월 12일까지 휴회하였다.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청과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계획안·건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는 9월13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시한연장대정부건의안, 태권도공원경주유치결의안,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등의 안건을 처리 한 후 제191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일 : 2004. 8.31(화)

라. 집회 일시 : 2004. 8.31(화)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4. 8. 31 ~ 9. 13(14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58회)

○ 상임위원회

구 분	계	의회운영	기 획	행정사회	교육환경	농수산	산업관광	건설소방	특별
금 회	13	1	1	2	2	2	2	2	1
누 계	256	27	26	38	43	27	30	27	38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4. 8.31(화) 11:00 (제1차)	01. 제191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03. 휴회의건	원안가결 〃 〃
9. 1(수) 11:00 (제2차)	01. 도정에 관한 질문 ▶ 김정기 의원 (김천시, 산업관광위원회) ▶ 윤경희 의원 (비 례, 건설소방위원회) ▶ 정무웅 의원 (울릉군, 기획위원회) ▶ 박종욱 의원 (청송군, 교육환경위원회) ▶ 박두필 의원 (비 례, 산업관광위원회)	
9.13(월) 11:00 (제3차)	01.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안 02.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03.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 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04.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05.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 06.「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 시한연장대정부건의안 07. 태권도공원경주유치결의안 08.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 〃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9.13(월) 11:00 (제3차)	0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 건의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원안가결 〃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9. 6(월) 11:00 (제1차)	○ 2004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 ○ 제192회회기협의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원안가결 〃

<기획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9. 6(월) 11:00 (제1차)	○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9. 2(목) 11:00 (제1차)	○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 자치행정국, 경도대학 소관 ○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안	원안가결
9. 3(금) 11:00 (제2차)	○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 자연환경연수원,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 9~9.10	○ 현지 확인(봉화 · 울진) -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 청취 - 지역개발사업 현장(2개소) - 사회복지시설(1개소)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9. 2(목) 11:00 (제1차)	○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 3(금) 11:00 (제2차)	○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가결
9. 8~9. 9	○현지 확인(영덕 · 울진) - 영해중·고등학교, 울진군하수종말처리장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9. 2(목) 11:00 (제1차)	○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가결
9. 8 ~9.10	○ 현지 확인(영양 · 봉화) - 영양 고추시험장, 봉화고랭지 약초시험장	
9.13(월) 10:00 (제2차)	○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	원안가결

<산업관광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9. 7~9.8	○ 현지 확인(경주 · 경산)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태권도공원유치지역, 경북테크노파크	
9. 9(목) 11:00 (제1차)	○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태권도공원경주유치결의안	원안가결
9.10(금) 11:00 (제2차)	○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 경제통상실 소관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경상북도와베트남타이응우엥성간자매결연체결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적용시한연장대정부건의안	원안가결 〃 유보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9. 2(목) 11:00 (제1차)	○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 건설도시국 소관 ○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3(금) 11:00 (제2차)	○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 소방본부 소관	
9. 8~9.10	○ 현지 확인(대구 북구 학정동·안동·의성) - 종합건설사업소(본소, 지소) - 주요 건설사업장, 태풍피해복구 현장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4. 9.13(월) 11:20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의·의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결		부결			
				원안	수정				
계		10 (222)	10 (221)	9 (194)	1 (26)	(1)	(1)		
조례안	소계	5 (105)	5 (105)	4 (92)	1 (12)	(1)			
	의회 제안	(10)	(10)	(5)	(4)	(1)			
	도지사 제출	4 (75)	4 (75)	4 (69)	(6)				
	교육감 제출	1 (20)	1 (20)	(18)	1 (2)				
예산·결산		(21)	(21)	(10)	(11)				
동의·승인		1 (53)	1 (53)	1 (52)	(1)				
건의안		2 (10)	2 (10)	2 (9)	(1)				
결의안		2 (10)	2 (10)	2 (10)					
기타안		(23)	(22)	(21)	(1)		(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12 (226)	10 (221)	5 (105)	(21)	1 (53)	2 (10)	2 (10)	(22)		(1)	2 (4)
의회운영	2 (7)	1 (6)	(4)				1 (2)				1 (1)
기 획	(17)	(16)	(9)		(5)	(1)		(1)			(1)
행정사회	1 (63)	1 (62)	1 (43)		(17)	(1)	(1)				(1)
교육환경	1 (31)	1 (31)	1 (24)		(6)			(1)			
농수산	2 (14)	2 (14)	1 (5)		(7)	1 (2)					
산업관광	5 (34)	4 (33)	1 (15)		1 (14)	1 (2)	1 (2)				1 (1)
건설소방	1 (11)	1 (11)	1 (4)		(4)	(2)		(1)			
특 별	(21)	(21)		(21)							
본회의	(28)	(27)	(1)			(2)	(5)	(19)		(1)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Ⅳ.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5 (83)	(5)	(9)	(9)	1 (17)	1 (7)	1 (5)	2 (10)	(9)	(12)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8)	(4)	(2)	(1)	(1)					
교육환경	3 (18)			(1)		1 (7)		2 (9)		(1)
농 수 산	(8)			(1)	(1)				(6)	
산업관광	1 (17)		(7)	(1)			1 (5)			(4)
건설소방	1 (27)	(1)		(5)	1 (15)			(1)	(3)	(2)
특별위원회	(3)									(3)

※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6 (83)	6 (83)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8)	(8)				
교육환경	3 (18)	3 (18)				
농 수 산	(8)	(8)				
산업관광	1 (17)	1 (17)				
건설소방	2 (27)	2 (27)				
특별위원회	(3)	(3)				

※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4. 8.23)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안	행정사회 (2004. 8.24)
경상북도지사 (2004. 8.23)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농 수 산 (2004. 8.24)
경상북도지사 (2004. 8.23)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관광 (2004. 8.24)
경상북도지사 (2004. 8.23)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산업관광 (2004. 8.24)
경상북도지사 (2004. 8.23)	경상북도와베트남타이응우엔성간자매결연체결안	산업관광 (2004. 8.24)
경상북도지사 (2004. 8.23)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04. 8.24)
경상북도교육감 (2004. 8.24)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4. 8.24)
이 달의원외 11인 (2004. 8.26)	태권도공원경주유치결의안	산업관광 (2004. 8.27)
채희영의원외 13인 (2004. 8.3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시한연장대정부건의안	산업관광 (2004. 9. 1)
김정기의원외 16인 (2004. 9. 1)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 (2004. 9. 6)
박승학의원외 2인 (2004. 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 (2004. 9. 6)
이정백의원외 15인 (2004. 9.10)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	농 수 산 (2004. 9.10)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4.7. 9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4. 7.22
2004.7.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 조례	2004. 8. 2
2004.7. 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 중개정조례	2004. 8. 2
2004.7. 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2004. 8. 2
2004.7. 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	2004. 8. 2
2004.7. 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2004. 8. 2

3.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일 자	장 소	활 동 내 용
7.22~7.24	• 동해안(포항, 울진) •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 적조대비 상황 청취 및 현지 확인 • 엑스포 준비상황 보고 및 현지 확인

4. 기타 사항

○ 포항 e병원개원식 참석

- 일 시 : 2004. 7.10(토). 11:00
- 장 소 : 포항 e병원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

○ 도의회 지원인사와의 간담회

- 일 시 : 2004. 7.13(화).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지역혁신 토론회

- 일 시 : 2004. 7.16(금). 10:30
- 장 소 : 포항 공대
- 참 석 : 이철우 의장

○ 대구·경북지역 발전협의회

- 일 시 : 2004. 7.27(화). 07:30
- 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2층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10회 우리쌀 지키기 경북여성 농민한마당

- 일 시 : 2004. 7.27(화). 11:00
- 장 소 : 상주 북천둔치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격려사)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4. 7.29(목). 11: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운영위회의실
- 참 석 : 안순덕 운영위원장

○ 대구MBC 디지털TV방송 개국식

- 일 시 : 2004. 7.30(금). 10:30
- 장 소 : 대구 MBC사옥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6회 봉화 은어축제

- 일 시 : 2004. 8. 4(수). 11:00
- 장 소 : 봉화 내성천변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

○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참석

- 일 시 : 2004. 8. 4(수). 19:30
- 장 소 : 안동 낙동강 둔치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

○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 일 시 : 2004. 8. 5(목). 11:00
- 장 소 : 서울시의회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5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 일 시 : 2004. 8.15(일). 10:00
- 장 소 : 영주 풍기광복단 공원
- 참 석 : 이철우 의장(만세삼창)

○ 중국 하남성 친선방문단 래방

- 일 시 : 2004. 8.20(금).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유기농업 국제학술 심포지엄

- 일 시 : 2004. 8.20(금). 19:00
- 장 소 : 울진 덕구온천 관광호텔
- 참 석 : 방유봉 농수산위원

○ 2004년도 제1차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 이사회

- 일 시 : 2004. 8.27(화). 11:00
- 장 소 : 안동 파크호텔 1층회의실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

Ⅵ. 도정질문

□ 제2차 본회의

김정기 의원(산업관광위원회)

농민 출신 산업관광위원회 김정기의원입니다.
저는 농민들과 좀더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하려 했는데 의장께서 그 권한으로 산업관광위원회로 가라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농사짓는 일 그것밖에 없으니까 언제나 깊은 관심으로 농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장기화된 침체에다가 고유가, 기상악화 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끝없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들어 특소세와 근로소득세를 인하하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이제야 위기의식을 갖는 모양입니다. 제발 경기가 좋아져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이번 경제대책이 가뭄에 찌든 천수답에 잠시 내리는 가랑비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굳이 명시하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은 부디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미래를 합리적인 계획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제가 오늘 원고를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재촉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대안들이 도민의 목소리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경북과 대구의 통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통합문제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회의의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십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늘 돌아오는 답변은 생각해 보겠다, 보다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 등의 대답뿐이고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는 경북과 대구의 통합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과 대구의 통합 대신에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넓혀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문제, 한방산업단지문제, R&D특구문제 등 경북도와 대구시에 공동으로 걸린 특정 현안만 있으면 지역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사사건건 반목과 갈등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북과 대구의 통합이 간단치만은 않은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론은 겁이 나서 한번 건드리지도 못한 채 매일 변죽만 울려댄다면 도대체 지역의 진정한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낸다는 것입니까?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경북과 대구의 통합문제의 결말을 지을 시기가 왔습니다. 더 이상 들끓는 여론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후손들로부터 우리 경북의 선조들은 직무유기만을 일삼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제 정말로 경북과 대구의 통합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89회 임시회에서 경북과 대구의 통합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역시 드린 바 있는데 3개월 전 지사께서는 통합, 도청이전, 현상유지의 방안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비록 3개월 전이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경북·대구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3개월 전과 비교할 때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진전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통합,

도청이전, 현상유지의 방안 중에서 현상유지는 빼고, 이거 현상유지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어떠한 입장인지, 반대하는 세력은 어떤 부류가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 아시는 대로 명확하게 밝히시고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람 되게 여러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북과 대구의 통합문제는 우리 경북과 대구가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구·경북통합추진특별위원회가 우리 경상북도의회 내에 설치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경북과 대구의 통합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엑스포 기념조형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주 보문단지 내 경주 문화엑스포 공원에 건설될 종합문화테마파크의 상징조형물 천년의 빛이라는 건축물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상징건축물은 높이 50m의 디지털첨성대와 높이 26m인 복합문화센터가 포함돼 있으며, 향후 300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오는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칠 예정에 있으며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상징조형물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상징조형물에 3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어떤 상징조형물을 세운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아주 큰 교육적 가치가 있던지 아니면 사회적인 통합 등을 위해 필요하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국가적으로 크게 기념할만한 일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나 사건이 있어야 세우는 것인데도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동네

잔치에 불과하다는 핀잔을 들은 문화엑스포를 기념하는 상징조형물에 거금을 들여 건립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징조형물을 건립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은 새천년을 앞두고 지름 360m에 높이가 50m나 되는 대형 건축물을 짓고 밀레니엄돔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밀레니엄돔은 21세기 런던의 상징적 건축물이 될 것이며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에펠탑의 파리,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뉴욕, 오페라하우스의 시드니 등 다른 세계적 도시에 버금 갈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 착오였습니다.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면서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9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새천년위원회가 상징조형물로 500여억원을 들여 천년의 문을 건립하려다가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면서 밑빠진독 상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500여원의 돈이 들어가는 조형물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무산된 바 있는데 요즘 같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300억원을 들여 이 상징조형물을 무엇 때문에 꼭 건립해야 하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지난 1998년부터 개최한 경주엑스포는 2000년까지 두 번 대회를 치르는 동안 2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고 지난 2003년 대회가 끝난 후에는 동국대 관광산업연구소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지역관광산업에 대한 궤도는 높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경주엑스포로 인해 경주나 우리나라가 외국에 크게 홍보됐다고는 보지 않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3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상징조형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도민의 혈세로 예산의 낭비를 자초할 우려가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징조형건축물을 건립하지 않는 대신 그 돈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농촌, 농업, 농민문제, 전통문화의 보전 등의 부분에서와 같이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실리적인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도청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었다면 경북의 구심지 여론이 이를 방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다음 고속철도 김천역사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이제 150여일이 지났습니다. 고속철도 김천역 설치 건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셨던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속철도의 개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실익이 무엇이냐에 대해 논의도 많았고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북 고속철도의 김천역사 입지 결정이 신행정수도 이전 등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는 당초 올해 6월말에 입지를 확정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올 연말쯤에나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지 결정이 늦어지면서 김천, 구미지역에서는 역사 입지를 두고 봉산면 쪽이냐 농소면 쪽이냐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투자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투기꾼마저 득실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고속철이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경북의 중소도시들은 종전보다 더 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특히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륙 최대 산업단지인 구미시의 경우 그 불편함이 막대합니다. 김천역 설치에 대하여 김천시민과 구미시민 뿐만 아니라 상주, 칠곡, 성주 등 인근 많은 지역민이 하루빨리 김천역사가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늦어진다면 고속철도로 인한 경제발전 기대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의 불편만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하루빨리 김천역사의 입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집행부에서는 건교부 또는 고속철도공단과 입지에 대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천역사 입지로 결정되었을 경우 그를 바탕으로 한 연계발전계획, 그리고 근교 및 인근지역과의 교통망, 그리고 역세권 개발 등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우리 경북의 김천시를 중심으로 경북 일원 지역이 유치경쟁도인 경기도의 부천지역을 물리치고 2006년 제87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 유치라는 쾌거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전국체전이 2006년도에 열린다고 하여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체계적인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본의원이나 도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경기도 부천과 경합할 때도 경북은 경기에 비해서 체육기반시설, 재정능력 등 모든 여건에서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 바도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국체전의 개최연도가 2006년도라 하나 부족한 체육기반시설 등을 보완하려면 지금부터 빨리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 15만도 안 되는 작은 농촌도시에서, 더욱이 재정형편이 열악한 중소도시가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는 것은 체전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현재 도지사와 개최지의 시장은 그 임기가 끝난 후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히 하여 전국적인 웃음거리를 만들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천시는 이미 체전기획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체전준비에 돌입하여 초 긴장상태로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걱정은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문제는 돈과 시간입니다.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확보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준비는 어떻게 할 방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도승회 교육감님의 합리적이면서도 교육적 소신과 역량에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여러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하여 교육의 성과를 진작하기도 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흔히들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백년대계를 3년이 멀다 하고 흔들어 대니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도교육청의 예산은 최근 3년간 학생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2002년도에 1조5,935억원, 2003년도에 1조8,055억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1조9,046억원으로 예산 총액은 역비례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로 많은 예산들이 교육부분에 투자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돈으로 계산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효과가 보장된다면 국가가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년 증가되는 예산을 투입해도 그동안 교육개혁의 성과를 아무리 꼽아 보아도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라고 떠오르는 게 없는 것은 본의원의 느낌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선 2대에 이어 3대취임 2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추진한 성과 때문에 교육의 체질이 어느 정도 라도 변화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또 사제 간에 따뜻한 정이 있는 교실로 변화하였습니까? 아니면 초·중·고 교육이 질적으로 달라졌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학교는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여건이 좋아 우수한 농촌학생들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까?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채 지역적이고 부수적인 측면만 중요한 문제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획기적으로 경상북도의 질 높은 교육의 향상을 꾀하고 교육현장의

올바른 정도를 세울 방안은 없는지, 획기적이고도 명확한 교육운영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한 본위원이 드리는 질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승회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후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 실현을 위한다고 늘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몰고 공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학생들을 경쟁으로만 치닫게 하는 비평준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입니까?

얼마 전 교육감께서는 고교평준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을 밝히기는 하셨지만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이 단식농성을 하면서까지 포항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추진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장·단점이 각각 모두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의 교육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평준화가 옳다 혹은 비평준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평준화 문제 때문에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갈등에 휩싸여 있었고 물리적인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마치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는 경상북도의 교육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과연 그에 합당한 책임과 역량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교육감의 보다 명확한 의견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준화 문제로 인해 불거진 깊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치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교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원이 관련된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를 빚은 교원들이 큰 제약 없이 승진하거나 인근의 급지가 낮은 학교로 옮겨 근무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크나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물의를 일으킨 교직원을 징계 차원에서 급지가 낮은 농촌지역으로 보낸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경북의 농촌학교를 일종의 유배지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학교의 학생들은 아무에게나 배워도 된다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자 중에서 낮은 징계를 내린 것은 행정심판이나 경찰조사 결과 아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삶의 진리를 가르치고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현장에서 법적인 잣대로만 다룬다면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양심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물의를 일으킨 교직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북교육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경북교육대학설립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7월27일에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대학설립추진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경북교육은 교육대학이 없어 초등교원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경북교육대학설립의 당위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경북교대를 설립한다고 해도 부족교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욱이 경북의 교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다, 5년 후면 지금의 교사수가 남는다고 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대학설립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주요한 근거로 보여주고 단지 교육

위원회의 위원들이 추진하는 문제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도승회 교육감께서는 경북교육대학 설립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뀌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육적 소신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경북교육대학설립에 관한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구역과 학교신설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구역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모 지역에서 아파트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허가되자마자 초등학교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신축아파트에서 겨우 1.5㎞ 떨어진 면 지역에 전통 있는 초등학교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생들이 없어 거의 텅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신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행정구역이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행정구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인근에 이미 학교가 있는 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새로 세워야 한다면 그에 드는 엄청난 예산은 또 어디에서 가져와야 합니까?

교육예산집행의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인근에 학교를 두고 있으면서도 더욱이 해당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텅 비어 있는 데도 행정구역이 다르다 하여 새로이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난치병 어린이 돕기 모금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21일을 난치병 어린이 돕기의 날로 정하

고 도내 23개 지역교육청에서 일제히 사랑나누기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시작한 도교육청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난치병 어린이 돕기 행사를 하고 있는바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사회복지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교육청에서 큰일을 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도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반성과 함께 본받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31일자로 1차 종료되어서 약 21억원정도의 모금액이 모여졌으며, 이 모금된 금액은 유치원, 초·중·고의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학생 전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성금의 전달대상이 학생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내에는 난치병은 물론 불치병을 가진 정신지체아 등의 일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이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어린이는 단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금의 전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금을 내신 많은 뜻있는 분들도 난치병 어린이 돕기로 생각하고 성금을 낸 것이지 학적부에 올라와 있는 학생들만 돕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행사의 제목도 어차피 난치병 어린이 돕기입니다.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조차 가지 못하는 혹은 학교조차 갈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도 성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안 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읽어 나가다 보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빡빡하다고 의장님께서 재촉을 하셔 가지고 좀 빨리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희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윤경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과 도승회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백년대계 후진양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처의 기구 및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방식에 있어서는 그 범위에 있어서도 임명권을 비롯하여 채용, 지위, 감독, 징계, 승진, 전보 등 모두를 포함하는가 아니면 일부에 국한하는가에 따라서 인사권 강화는 효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 직원의 승진, 전보, 임명 등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회에서 의장의 명을 받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의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고자 그동안 전국적인 모든 지방의회와 그의 협력체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명토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전향적인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보좌관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대표성인 자율성, 전문성이 각각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의원 신분 및 권한에 대한 강화는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사무처, 지방자치단체간 대폭 이전되고 있으며, 팽창하는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책개발과 도정의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전문성 있는 의원보좌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국회나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무엇이며, 특히 정책책임자로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보좌관제에 대해서는 전반기 의회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 정원 및 증원 요청을 하였는데 재의요구한 것은 지방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정책의 순환과정과 경북·대구 지역간 지역협력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재개된 이후 많은 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정책은 대개 중장기에 걸쳐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 인접한 대구광역시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차원의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에 대해서 대구시와 연관성을 가지고 광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정책이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정되고 집행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지역개발시설 유치경쟁으로 인한 지역단체와 지역주민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현상 등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간부들은 이런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대구지역은 광역행정, 특히 지역개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걸친 지역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경제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단체자간 운영의 독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이 강화될수록 이런 가능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역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영역의 개발과 적절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행정협의회나 실무행정 간의 비공식적 협력체제는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한데 집행기관에서는 시·도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체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 책임자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역정책개발 협력실적에 대해서 보면 경북과 대구는 한뿌리 통합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지만 그리 간단하게 빠른 시일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인근 대구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광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정책은 긴밀한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상호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대구 인근지역 시·군의 대구시로 편입문제 등이 불거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시·군의 대구시로 편입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시·군별로 문제점을 찾아서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북부권에서 지금 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6축 고속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6축 고속도로는 경북 서북지역의 접근성 제고와 지역개발 촉진, 나아가 국토공간의 미연결로 확보와 교통 특성상 중부권·강원 및 경상북도 북부권역의 연계성 강화와 이동성 확보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 동서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유일한 사항이므로 동서축에 증가하는 통행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동서6축의 고속도로 건설이 그 대안노선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언론이 동서6축 고속도로가 서천~상주~영덕까지 곧 착공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도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부권 고속도로와 관련된 시·군 단체장은 모두가 내가 한 것이라는 공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과연 동서6축 고속도로가 영덕까지 곧 착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이의근 지사님은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의근지사님에게 도청이전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지사님 말 그대로 신물이 날 정도일 겁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정질의 했을 때도 도청이전 문제 정도는 제가 마지막 답변자가 되고 마지막 질의자가 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이제는 도청이전 문제가 나오면 거의 머리 속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10년 동안 이 문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도청문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도청이전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의회차원에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결과 후보지를 6개소에서 4개소로 압축하였습니다. 집행부로 이전을 하여 행정절차를 밟도록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도청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전혀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도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회에서 용역결과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여 이관한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 했는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둘째는 대구시와 통합문제는 왜 거론되었는지, 아니면 도청이전 문제가 복잡하니까 대구시와의 통합문제가 거론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갑니다. 또 대구시와 통합되었을 때와 도청을 이전했을 때 상호 비교 연구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는 도청이전 문제를 같은 시기에 거론되었던 전남도청은 과감한 용역결과 행정절차를 거쳐서 중앙정부로부터 1조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광주시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는 지금까지 도청이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10여년이라는 세월동안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이의근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려 주시고

네번째 마지막으로 앞으로 도청이전을 위해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대구시와 통합정책을 펼 것인가, 또 조금 전에 이의근지사님이 대구시 통합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그 말씀도 하셨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

언제까지 도청이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하고 지사님에게 묻고 하겠습니까? 지사님도 이제는 3백만 도민 앞에서 분명히 도청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대구시와 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7개년 계획의 한 축으로 실시하는 학급규모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급규모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학급당 35명 이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급규모가 어느 선일 때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의견차이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학급당 15~20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업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교사 대 학생, 1 대 1의 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 학급당 학생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교육성취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급규모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50~60명일 때와 현재 35명이하일 때는 분명히 학업성취도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배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시설환경이 50~60명에서 35명 선으로 그냥 학생수가 줄었고 교실수가 많이 늘어났구나 정도에서 그치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교육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교육방법이나 학습방법도 변화가 있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일부 언급했지만 학급규모 감축정책이 공교육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7차 교육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건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질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질 면에서 향상시킨 점이 있다면 교육감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검증이나 시범운영 없이 획일적인, 또 단기간 내에 학급규모 감축에만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증축 및 신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교원증원이나 교원확보 방안 없이 또 우수 교사확보 계획도 없이 명예퇴직을 요구한 후 교원이 모자라니까 그 교원을 다시 재투입하는 교육정책이 대표적인 오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 교원수급은 또 어떤지, 농어촌 교육문제가 향상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적정수준의 학급규모와 감축한 학교는 시설확보 면에서는 좋지만 대규모 학교는 학교 자체가 너무 비대하여 교육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내에 이런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집단시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에서 모든 재원으로 국민소득의 1만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어떠한 교육정책을 개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또는 글로벌 시대의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갈수록 우리의 농어촌은 황폐화되어 가고 농어촌 교육도 같이 퇴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승회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미래의 교육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어촌지역, 즉 군부, 초·중·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8개면이 있다면 4개면씩 분리하여 학교집단화체제시스템을 구성하여 초등학교는 완벽한 스쿨버스 제도를 실시하고 초·중·고등학교는 쾌적한 환경 속에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농어촌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경북·대구지역에 대학입학 시 현재보다 가산점을 더 올려서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농촌은 이렇습니다. 30~40대 인구가 농촌에는 거의 없습니다. 젊은 학부모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교육 제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배우지 못 했지만 내 자녀만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만 한다' 는 그런 목적 하에서 다 도심으로 떠나고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도는 분명 농도입니다.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제도가 연차적으로 개선되어 젊은이들이 더 이상 농촌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첫째는 교육개선과 연차적인 교육 질이, 그리고 우수교원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것입니다.

교육문제와 앞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들어보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희의원 : 보충질문】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관계문제, 오늘 이의근 지사님의 말씀도 거의 이제는 통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경상북도는 통합을 요구하고 통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대구시에서는 우리 경상북도와 통합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꼭 묻고 싶고,

전자에 대구시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곧 없어지니 마니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대구시 생각이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만 늘 러브콜 하는 식으로 괜히 짝사랑하는 그런 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저 또한 항상 언제 어느 좌석이건 이야기할 때 나는 경북·대구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의근 지사님의 대구·경북이라는 이런 말 자체가 우리 이의근 지사님께서 스스로가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과연 경상북도가 우선적으로 탄생했느냐 대구시가 우선이냐 그것은 참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통합론으로 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통합에 관련된 어떤 추진사항과 여러 가지 집행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의회에 수시 보고해 줄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웅 의원(기획위원회)

울릉출신 정무웅의원입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 중국의 동북공정의 업무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구려사의 왜곡, 친일행정 등 과거사 청산에 대한 제 정파간의 이전투구식 갈등, 21년 만에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고유가행진 내수부진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 사상최고의 청년실업률, 빈곤과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과 생계형범죄의 급증 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치혼란, 경제불황, 사회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7월초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대가없이 마감하고 역사적인 후반기 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간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차치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열악한 자치환경에도 불구하고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한 집행부의 감시·감독기관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향후 후반기의 의정활동도 자치실시의 근본목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의원은 이번 제191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시종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승진제도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 5급 승진임용방법에 있어서

지난 2002년12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2003년 1월 행정자치부는 승진시험과 승진의결병행제 운용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그해 4월 그동안 시행되어져 오던 100% 심사승진 제도를 심사승진 50%, 승진시험 50%로 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승진시험제도는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 측과 정치인사를 막고 인사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는 오는 12월 처음으로 도 자체에서 승진시험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상호 연대하여 승진시험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항의방문, 성명서발표를 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8월5일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하여 폐지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5급승진시험제도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와 문제점은 지방공무원 5급 승진대상자 대부분은 근무경력이 20여년 이상으로 일선 행정경험이 풍부함에도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인사차별 제도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의결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는 근무경력이 비슷해 선정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간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제도운영의 안정성, 격무부서 근무자의 사기 등을 고려한다면 지난 '95년 이후 폐지되었다가 2002년 정부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도록 한 개정공무원승진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찬반논란이 분분한 만큼 인사대상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평성, 객관성,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

도를 개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도개선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연구개발(R&D) 특구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는 23개 전체 시·군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U자형개발, 영덕~안동~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 신행정수도 이전 대응전략, 한방산업육성,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치지원, 포항공대 지방연구중심대학 선정지원, 포항 R&D특구 지원육성, 경주 태권도공원 유치, 가야문화권개발, 한국국학진흥원 육성 등 주요 도정 현안에 있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포항시 남·북구일원 447만평 부지에 2005년부터 2010년에 걸쳐 국비 8,015억원, 지방비 990억원, 민간자본 2,825억원 등 총 1조 1,830억원을 투입하여 R&D단지조성, 첨단생태산업단지, 첨단소재 산업, 집적단지 등 3개 분야 34개 사업의 포항R&D특구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포항R&D특구가 지정된다면 소재분야의 산·학·연·관 공동 기술개발협력시스템 구축과 관련산업의 집약적 육성은 물론, 고용 창출 10만명, 연구인력 5,000명, 다수 첨단기업인구 80만명의 첨단 과학도시로의 부상 등 경상북도는 물론 국가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할 엄청난 경제효과의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년여 동안 특구지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여 왔으며 금년 2월 국가균형발전으로 인해 특구지정육성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특구지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지난 3월 국정 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덕 R&D 특구만을 추진토록 지시함으로써 현재 대덕 R&D 특구법만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포항은 포항공대 방사선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스코, 미래성장 동력 산업분야 75개소 등 우수한 연구인력과 풍부한

산업시설을 구비함으로써 R&D 특구로서 그 역량과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특구지정에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도와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구가 R&D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포항과 대구 모두 특구지정에 실패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덕 R&D 특구법을 보면 연구개발을 추진할 인프라가 핵심적 사항임에도 R&D 인프라구축이 전무한 대구가 R&D 특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또 그 간 R&D 특구지정에 관해 대구시와 협의나 조율한 사실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R&D 특구지정 소관부서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경륭 위원장이 포항 R&D 특구지정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치전략과 아울러 특구유치 경쟁지역에 대한 대응책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해봉의원을 방문하여 포항을 R&D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일 방문성과와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우리 도 주요 도정현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집행부 지역출신, 정치권인사,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실질적 협력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수락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제고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5월13일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에 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 등 5개 중점유치 대상기관을 포함 35개 공공기관에 대해 유치제안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원칙은 첫째, 지역특화전략사업과 연계된 기능군은 해당 시·도로 최우선 배치하며 둘째, 지역전략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유사기능군은 낙후도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셋째, 지역특화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나머지 공공기관은 개별이전 한다는 등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7월 시·도와 비교우위 공공기관유치 희망기관 조사 이후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시·도별 면적, 지역여건과 사업특성 등을 무시하고 시·도별 일률배분원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형적인 갈라먹기식 이전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만약 시·도별 일률배분원칙에 의해 공공기관이 이전된다면 전 국토의 20%나 차지하며 전라북도의 2.4배나 되는 우리 도가 15개 정도동수의 공공기관만이 이전된다면 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역균형 발전적 정책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본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은 지난 16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사님께서 직접 공공기관이전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의 경북이전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일 요담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 정부의 이전대상 확정발표를 앞두고 우리 도에 이전될 공공기관의 유치전망을 밝혀 주시고 유치홍보 및 향후 이전 일정에 대비하여 구성한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활동상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유림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전통적 농도로 국유림 23만1,435ha, 도유림 1만4,073ha, 사유림 99만3,258ha 등 총 123만8,766ha의 광범위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의 최근 3년간 이용실태를 보면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소가 208ha에 사업비 1억8,3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가 90ha에 사업비 6,8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가 214ha에 사업비 2억200만원 등 계 512ha의 면적에 4억5,3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대부 및 허가내역 현황을 보면 산림환경연구소가 대부 5,000평방미터에 대부 및 사용료 2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가 대부 8,000평방미터에 대부 및 사용료 3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가 대부 4만4,000평방미터 대부 및 사용료 100만원 등 계 5만7,000평방미터에 대부 및 사용료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 및 공공용도로 대부된 현황은 중앙산관리사무소에 공공용 무상대부료 3,973평방미터,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에 1,121평방미터에 사용대부료 70만 6,000원, 칠곡군 가산면소재 칠곡군 가산면 금하리 산49-1번지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허가된 3,603평방미터에 연간사용료 대부료 2만4,000원, 역시 칠곡군 지천면소재 토종벌사육용으로 1만4,800평방미터에 연간 사용대부료 5만3,400원 등으로 이는 강원도 등 인근 타 시도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현행 조례나 법령상 민간이 도유림을 대부하여 사용이 가능한 만큼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에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저렴한 대부료와 지역특산물을 재배 생산함으로서 획기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그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청소년 체력약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최근 우리 교육현실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작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문제, 고교평준화 제도, 대학입시제도, 교원수급정책 등 한마디로 난마처럼 얽혀 어느 하나 난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교육분야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한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당국 등 교육주체들이 차분하게 지혜를 결집할 때만이 해결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8월2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의하면 초중고교생들이 해마다 체격은 비만화 되어 가고 있는 반면 달리기, 멀리뛰기 등 운동능력 체력은 급격히 약화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3학년생의 경우 키와 몸무게는 지난 '99년 172.7㎝, 64.6㎏에서 작년에는 173.6㎝에서 67.6㎏,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149.1㎝ 41.2㎏에서 149.8㎝ 43.1㎏로 각각 늘어났으나 팔굽혀펴기를 제외한 전 체력종목에서 모두 체력이 떨어져 체력약화현상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2000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시간을 줄이고 체육교과 과목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게 된 점 등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고2, 3학년생은 체육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됨으로서 아예 체육수업을 하지 않는 학생도 많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경기대회를 보더라도 체력은 국력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건강한 몸에서 우러나오는 강인한 체력은 윤택한 삶은 물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약골에서 강골로 전환시키는 도교육청 차원의 중장기적 프로그램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의 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여정부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분의 행정과 재정 등을 지원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교육부,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이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 방안은 교육행정, 재정, 지방행정, 재정과 연계함으로서 현행 평준화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시장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교육평준화의 와해, 사교육비 증대, 입시위주의 교육전략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데 답변자께서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의 통합이 현 교육현실에서 적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교원의 지방직화, 자치단체화, 교육청, 시도의회와 교육위원 상호간의 위상 재설정 문제도 있고 교육감직선제 및 교육부지사 신설 등 제반문제가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답변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의근 지사를 위시한 집행부, 도승회 교육감을 위시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해방 이후에 혼란기를 겪고 난 다음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갈등의 시대입니다. 세대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그 다음에 생각의 갈등, 여러 가지의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제 치하에서 고생하시면서 6.25를 겪고 4.19를 겪고 5.16을 지나고 5.18을 지난 노년세대가 생각하는 세대와 지금 자칭 386이라고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차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도 완전히 2개의 세대가 갈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우리가 갈 길은 뭔지, 국가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또한 국가보안법 밑에서 생활하는 세대와 폐지를 주장하는 세대, 호주제 하에서 생활하는 우리와 호주제를 폐지하려는 세대, 이 갈등 속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6.25 참전용사들이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좌파를 하던 사람도 민주인사가 되고 국가에서 유공자로 되는데 우리는 6.25때 총칼을 들고 적군과 싸웠지만 한 달에 6만원을 주느냐, 이렇게 노인들이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노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 사는 세대고 또한 호주제 폐지, 그래서 어른들이 그 한여름에 국채보상공원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호주제 결사반대, 저는 노인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은 족보를 만들고 유림을 지키고 향교를 지켰지만 지금의 세대는, 여러 어른들이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지금 애들의 이름이 넉자입니다. 성이 아버지가 박가고 엄마가 김이면 박김 무슨 숙이, 뭐 철수, 이래서 이름이 넉자인데 이미 호적상으로 남녀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미혼모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잘 되는 업이 정자은행입니다. 그래서 정자를 보관해 놓고 결혼은 하기 싫고 아기는 키우고 싶을 때 얼마든지 좋은 씨앗을 받아서 생산할 수 있다 하는 세대도 온다, 그 다음에 호주제가 폐지되면 모성을 따를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남녀간에 여자가 하도, 요새 남자가 워낙 약하니까, 이번에 혼인신고할 때는 당신은 내 뒤로 가고 내가 앞에 가자 하면 그렇게 갑니다. 그런 세상이 옵니다 하는 얘기도 내가 했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가 혼미하게 사는데, 특히 영남지역이 유림의 고장이요, 향교의 고장이요, 정말 양반의 고장인데 앞으로 문화재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상 문화재 사업이 필요할지 없어질지도, 또 지켜야 될지도 안 지켜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세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지사님이 이 혼미한 세상을 보는 눈이 또 안목이 어떠신지 한번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여러 분들이 공공기관 유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합니다. 얼마 전에 16일날 지사께서는 발전위원장을 만나러 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한전과 도로공사입니다. 한전이 연간 53조원입니다. 도로공사가 연간 28조원인데 왜 한전이 경북으로 와야 되느냐, 원자력발전소가 2개 해서 18기가 있는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또한 이 원자력발전소는 한전의 재투자사업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한전에, 미안하지만 수년전에 우리 경상북도 세금을 10억을 갖다바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울릉도 풍력발전소, 엉터리 같은 한전 기술 믿고 10억을 갖다넣었습니다. 그런데 2기를 하려고 하다가 한 기를 해 놨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불을 줘 놨습니다, 한전에.

그래서 기어코 다른 데보다도 한전이 가장 유력사업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배려도 있고 또한 국토의 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지역발전은 여야가 없다, 제가 우리 대구·경북을 한심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호남, 충청, 강원, 경남, 이 모든 곳에는 정치권이 여야가 없이 한데 뭉쳤습니다. 유치 노력을 대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경북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경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 같이, 여야가 없습니다. 지금 구석구석에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 차제에 우리 시·도지사도 호흡을 같이 해서 이런 대구·경북이 모래알 같은 것을 시·도지사가 주선해 가지고 한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전력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여기에 관해서 왜 이렇게 우리 경북이 유리해지느냐 하면 수도이전이 충청도로 간다면 경북이 가장 중심지입니다. 이것도 행정수도가 왔을 때 지사로서의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시·도 통합론, 아까 얘기했는데 자꾸 제기됩니다. 이것이 당위성이, 왜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됩니다. 역사적으로 되지만 문제는 현안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방단지였습니다. 그 다음이 과학기술원인데 이것이 시·도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대구도 패션도시 어패럴이 지금 좌초위기에 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보면 시·도가 같이 공멸한다, 같이 공멸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설령 통합이 되지를 않더라도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도가 추진하던 한방산업 육성은 전국에서 23% 면적에 생산량이 28%입니다. 전국 1위입니다. 생산유통이. 또 아주 고부가 가치가 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런데 8월20일날 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공감하면서도 사업을 보류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첫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방산업육성을 위하여 대구시와 공조한 배경, 무엇 때문에 공조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간에 수립한 산업계획이나 추진배경, 대구시와 입지마찰을 빚은 이유, 이것이 입지선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셋째는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이 낮다, 사업보류를 한 진단 내용, 그 다음에 향후 추진방향과 정부에 대한 건의와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의 앞에서 말한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는, 지금 국회에서도 다행히, 다행히 그것도 국회에서도 시·도 통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80%가 찬성하기 때문에 이 시·도 통합론이 국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상당한 의원들이 내년도에 시·도통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거의 결의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여기에 우리 도와 의회가 그냥 있을 수 없다, 통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도에서는 시·도 통합추진반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가시적인 계획이 서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윈윈 작전, 소위 말하면 같이 움직이는 작전으로 한번 임해보자, 그래서 국회에다 더욱더 우리가 다시 진달을 하고 압력을 넣고 해서 빨리 이것을 입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부청사 문제입니다.

2003년에 준공한 북부청사가 사업비가 자그마치 69억6,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가축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등 4개지소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2개 입주되고 작년에 준공되어서 들어갈 때는 정말 북부지역 11개 시·군은 군민들 전체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은 큰데 역할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은 11개 시·군을 관할하면서도 먹는 물 검사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97년에 안동에 지소가 개설되어 가지고 업무가 자그마치 7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식품제조 및 업소가 11개 시·군에 2,387개나 있습니다. 또 대학 및 초·중등학교가 11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식품검사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인가 한번 질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 추진하겠다" 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답변서에도 보니까 뭐라 했나 하면 "상당히 주민편의상 편의도 있고 효율성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구하겠다" 하는 정도의 답변을 오늘 해놓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차원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꼭, 정 안되면 직제가 안 되면 직제도 줄 수 있습니다. 해서 검사반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꼭 해야 됩니다. 왜? 본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곧 영천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가면 북부지역의 사람들은 더욱 더 교통 등 여러 가지 편의가 불편합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가 있는데 여기는 토목기사가 17명인데 10개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10개군을 관장하고 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보면 2002년도에 수해가 115건에 10개군입니다. 10개 시·군에 115건, 2003년도에는 233건, 매년 일반사업이 평균 60~70건입니다. 이걸 감리를 17명이 다 해야 되는데 자그마치 지역이 현재 인원이 본원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본원보다도 훨씬 멀고 일이 훨씬 힘듭니다. 수해가 났다고 하면 산골짜기인데 안동에서 현장까지 가는데도 갔다 왔다 하루 걸립니다. 이 사람들이 수백 개 사업처를 다 돌아다니면서 감리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와가지고 복명서를 쓰고 나면 밤 12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최소한이라도 7~8명의 토목직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도저히 이래서 힘들어 못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촌의 민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가서 주민과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보면 이것도 도를 넘어갔습니다. 여기도 사실 보면 느는 것은 행정직이지 기술직이 잘 안 늡니다. 이 차제에 실질적으로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애로도 감안하시고 한 사람이 적어도 30~40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업체가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수백 리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 포상금제가 있었습니다. 도가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의 촉진, 자본을 유치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포상제도입니다.

지난 3월에 멋모르고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4월에 시행됐습니다.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령규칙에 보면「민간인은 1,000만 달러까지 유치하면 0.08%, 1억 달러 초과 시에는 0.05%를 지급포상하고 그 금액 중 2억을 넘지 못 한다, 공무원도 1억 달러 이상 유치시에는 0.01%의 포상금과 특별승진을 시켜준다」이랬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수개월 동안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한 단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질의 중에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지사님이 답변하실 것만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한 경제통상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자리에 있는데 포상제도 이 한 건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필 의원(산업관광위원회)

산업관광위원회의 박두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의근 지사님, 그리고 미래의 책임을 질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승회 교육감님,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방화와 분권화로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옛날부터 보수성이 강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다소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새로운 환경과 성공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의 지역인 상주 지역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장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장대는 사실상 경북 상주에서 충청북도와 같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충북 괴산과 같이 건너 뛴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장대는 제2의 금강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상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촉구하면서 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985년도 2월에 경상북도가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와 경계지역에 놓여 있으면서도 산자 수려한 이 곳에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문장대 일대 29만평입니다, 평수가 최고 좋은 자리에서 1988년도에 교통부로부터 온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1989년도에는 조성 승인이 나서 1996년도에 부지 96% 공정에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아깝게도 2003년도 5월30일날 대법원

으로부터 허가 취소를 당했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의 지역 경제도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지 상주 지역의 개발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등산을 하고 올라가고 할 적에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충북의 발전된 상황을 보고 또 경북의 발전상을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이 맺히는 이야기입니다. 약 20년 되었습니다. 그 넓은 산자수려한 그 곳에 29만평이라는 넓은 대지 위에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그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낙후된 이 지역의 웰빙 차원에서라도 개발시키는 데에 앞장설 용의가 계시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경북 상주개발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상 상주개발 보다는 경상북도의 개발에 대해서 충북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앞에서 제가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경북이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타도의, 다시 말하면 충청북도입니다. 횡포에 대해서 감정 있는 내용을 의원님 앞에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년된 문장대 개발도 역시 충북권에서 많은 데모라든가 비토라든가 환경평가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1995년도에 지사님도 오셔서 상황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뒤지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 횡포를 부린다는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우리 웅도가 충청북도에 대해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충북권에 의해 개발을 저해 당하는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근자에, 지난달입니다. 7월28일날 9시20분에 상주 모서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백화산을 끼고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골프장 하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충청북도에서 쳐들어 왔습니다. 약 60명이 모서 면사무소에 찾아와서 조재호라는 면장에게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주의 KBS, MBC를 다 동원해서 골든타임인 9시 뉴스에 방영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봤을 적에 상주의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웅도 경상북도가 당하고 있는 심정으로 솔직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발하는데 타도에서 왜 장난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어떠한 곳입니까? 신라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래서 저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좀 나아가서는 충북권에도 항의 경고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 본의원의 말씀입니다. 충북권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우리 전통 분야인 도자기 개발에 대해서, 또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가 오늘날 침체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앞날을 추구하다 보니까, 본의원이 사실상 이 연단에서 도자기에 대해서 사소한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하느냐 하는 의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이 문제가 큽니다.

우리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정말 선조들의 혼을 빚는 이 도자기입니다. 사실상 도자기 하면 여주 이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명장은 여섯 분입니다. 문경에 세 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김정옥 명장, 천한봉, 이학천 명장입니다. 여기는 차사발에 대해서 명장이고, 경주에 토기의 명장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신라 천년의 토기를 빚는 명장입니다. 유효웅, 배용석 명장이 있습니다.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 명장은 경기도 여주 이천에 윤 명장이라고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상북도가 이 문화 하나라도 국내에서 제일 가는 도자기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후부터 작지만 크게 확대 해석해서 발전시키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도자기는 지금 현재 문경에서 차사발대회를 5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번도 빠짐없이 올해도 갔습니다만, 이것을 좀 상향 조정에서 경상북도의 도자기가 활성화 되도록, 경주의 토기, 문경의 차사발, 고령의 고령요, 다시 말하면 고령도자기이지요. 국내에서 국외에서 최고입니다.

쟁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면서 도자기 문화를 형성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전세계에 우리 경상북도 도예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상북도사랑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간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끼리 한번 해 보자 해서 작년 10월 달 말부터 해서 11월초까지 해서 동경하고 오사카에서 이 전시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 많은 도민들, 많은 일본 시민들, 전 세계 타국의 시민들이 와서 봤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도자기가 여주 이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경북에서 이렇게 좋은 전통도자기가 나올 줄 몰랐다는 사람들의 표정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주 이천 도자기는 생활도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 하나의 100분의1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1회를 해놨으니까 2회는,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도공을 자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통의 얼을 빚는 우리 도공들이 많습니다. 명단을 보면 약 한 1,000명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더불어서 명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경상북도와 함께 해서 전국에서 도자기의 제일가는 축제라든가 공포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향후 우리 도자기 문화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교육청의 이전문제입니다.

상주교육청의 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현재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 학교 급식소를 청결하고 깨끗한 쾌적한 곳에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현명하신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식당 문화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고구려 역사왜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자주 봅니다. 고구려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정말로 누구나 다 가슴에 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은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침략을 당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외침을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인지 모릅니다.

일본이 수백 년 동안 우리를 침입했고, 역시 중국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현재 동족간에서, 남북 간에 사실상 장벽이 있는 것은 우리 한국뿐입니다. 우리 현실을 때로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중국은 우리 고구려 역사를 완전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곡이라는 말 자체가 대단한 낱말입니다. 이네들은 동북 소수민족의 작은 지방정권이라고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같은 왜곡의 조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때로는 비운의 국가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경상북도의 역사 내지 세계사 선생님들이 약 300명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라도 전달해서 향후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 무엇인가 가르치는 내용을 지시해서, 또 그 내용을 우리 역사 선생님들, 세계사 선생님들이 꼭 아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화사상입니다. 패권주의입니다. 그래서 약소국가를 늘 침략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사회라든가 경제, 문화, 특히 정치적인 관계가 얽히고설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의 지조론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 교육감님이 주도해서 각 학교에 이런 정신을 시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참작하셔서 이번 일로 인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온 국민과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경상북도만큼이라도 뿌리 있는 전통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뿌리가 없는 역사는 모래 위의 누각과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뿌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고 또 교육청에서는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는데,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먼 훗날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교육정책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늦게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예를 들겠습니다만 다소 정권에도 말년에는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잘 하고 계십니다. 두 양반님들 잘 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객관성 있는 혼자의 생각입니다. 끝까지 결자해지 된 그런 마음으로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평생 추억으로 가슴에 안고 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간단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Ⅶ. 5분 자유발언

□ 제3차 본회의

권종연 의원(기획위원회)

안동 출신 기획위원회 권종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요지부터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경북 북부권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북부청사 기능확대에 대한 정책제언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책임과 향후 대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96년 정부는 전국에서 개발수준이 가장 낙후된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선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보이던 북부 오지지역 5개 지구 11개 시군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96년부터 2007년까지 4단계별 사업계획 총 4조1,059억원을 확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건교부의 전국 529건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총 145건의 사업중 완료사업 23건 15.9%, 정상 추진사업 58건 40%, 촉진대책 강구사업 23건 15.9%, 재검토 대상사업 19건 13.1%, 그리고 폐지 검토사업이 22건 15.2%로 되어서 사실상 개발촉진지구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단계 사업인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사업의 경우 73개 사업 중 2003년 말까지의 완료사업은 21건에 불과하며, 2단계

사업인 산악휴양형 영주, 영양 사업도 불과 3건, 3단계 사업인 중서부 평야 상주, 의성 개발촉진지구의 경우 완료사업이 하나도 없이 전면 재검토 사업만 5개로 분류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경북내에서도 낙후가 가장 심화된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안동호 주변지구 안동, 청송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경우도 당초에는 총 24개 사업계획을 의욕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심화된 지역간 불균형을 금방이라도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완료된 사업이라고는 단 한 건도 없어 이 지역 주민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발표되어 시행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낙후지역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평균 15%, 과도한 지방비 부담 및 민간 투자유치의 난관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당초 개발촉진지구 사업 목적 자체가 낙후지역의 개발로 이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사정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를 핑계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업비 규모가 너무 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북부지역에서조차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사업조차 완료시키지 못한 이유와 현 실정이 이러한데도 경북도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운운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경북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재검토 또는 폐지화를 공론화시켰을 때 이에 대한 각 지구별 대책과 함께 낙후가 가장 심화된 북부지역에 대한 지사의 대안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 북부청사 기능 확대에 대한 제언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우리 도는 총사업비 69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행정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기반시설 확충, 위생환경 증진, 축산농가 소득증대 등의 기여를 위해 안동시 임하면 소재 경상북도종합건설사무소 북부지소 외 3개 기관을 경북도가 한데 모아서 북부청사를 개청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행정편의 구현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취지로 건립된 북부청사는 당초에 의도된 개청 목적과는 달리 민원인들에게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할뿐더러 명실상부한 경북도의 북부청사라기 보다는 일개의 출장소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67년 우리 도와 같은 취지에서 설립된 경기도 제2청사 의정부의 경우를 보면 불과 2과 32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1실5국 328명의 체제로 확대되어 도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북부청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의 경우 도내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 48개 노선 중 북부지역 10개 시군 28개 노선의 관리 인력이 불과 44명에 지나지 않아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또한 9명의 결원상황에서 운영 중이므로 이로 인해 도로보수, 확·포장사업, 수혜 응급복구 등 업무추진에 절대적 애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0개 시군의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고작 10여명의 인력이 책임지고 있으며, 산림의 보고인 북부지역의 사방·임도관리를 13명의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북부청사라고 명칭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북도 북부청사의 안동 개청에 대한 북부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이제는 도정 불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과다한 지역 유치경쟁으로 지지부진하던 차에 맞게 된 북부청사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효과를 행정의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북부지역에 대한 새로운 활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사께서는 다시 대구·경북 통합론을 내세우고 있고, 72억원을 투입한 북부청사는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행정편의 조차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94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10년간 시군별 인구 변동추이는 포항 18만명, 경주 13만명, 구미 15만명이 증가할 때 오히려 경북 북부지역의 인구는 안동 1만8,000명, 봉화 1만2,000명, 울진 9,500명, 청송·영양이 1만3,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민선 3기를 맞이하는 지사의 임기와 맞물린 기간 내의 인구변화 추이입니다.

함께 하는 도정을 표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치로 걸었던 지사의 재임기간 중 이와 같이 북부지역의 인원은 더더욱 감소하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낙후된 북부지역 도민들의 불만과 애로,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의 거시적인 안목에서라도 우리 도의 북부청사도 경기도 제2청사 운영의 결과처럼 청사의 기능과 위상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향후 북부청사의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이제는 밝혀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으로 첨부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5건

● 동 의 안 : 1건

● 건 의 안 : 2건

● 결 의 안 : 2건

【조례안 : 5건】

○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9. 13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관할 안의 시·군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의 확인)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서명은 주민투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무효로 결정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도의회의원
3. 도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⑨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안건과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⑩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⑪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⑫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⑬심의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⑭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도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table>
<tr><td colspan="5">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교 부 신 청 서</td></tr>
<tr><td rowspan="2">청구인
대표자</td><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td colspan="4"></td></tr>
<tr><td>청구 이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지사 귀하</td></tr>
<tr><td colspan="5">※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60g/m^2)

【 별지 제2호 서식 】

<table>
<tr><td colspan="4">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td></tr>
<tr><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주민투표
청구요지</td><td colspan="3"></td></tr>
<tr><td>서명요청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td></tr>
<tr><td colspan="4">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td></tr>
<tr><td colspan="4">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60g/m^2)

【 별지 제3호 서식 】

<table>
<tr><td colspan="6">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td></tr>
<tr><td>주민투표
청구요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청구인대표자</td><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6">수임자</td><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6">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지사 귀하</td></tr>
<tr><td colspan="6">※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60g/m^2)

【 별지 제4호 서식 】

<table>
<tr><td colspan="6">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td></tr>
<tr><td>주민투표
청구요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청구인대표자</td><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6">수임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6">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인)</td></tr>
<tr><td colspan="6">※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60g/m^2)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table>
<tr><td colspan="5">주 민 투 표 청 구 서</td></tr>
<tr><td rowspan="2">청구인
대표자</td><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td colspan="4"></td></tr>
<tr><td>청구 이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지사 귀하</td></tr>
<tr><td colspan="5">※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60g/m^2)

【 별지 제7호 서식 】

<table>
<tr><td colspan="5">이 의 신 청 서</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대 상</td><td colspan="4"></td></tr>
<tr><td>신청취지</td><td colspan="4"></td></tr>
<tr><td>신청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경상북도주민투표조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지사 귀하</td></tr>
<tr><td colspan="5">※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60g/m^2)

【 별지 제8호 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안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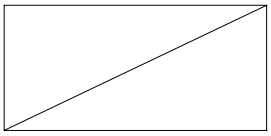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回)

의 결 사 항

의 안 명

제 출 자	경 상 북 도 지 사
제출 연 월 일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9호 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table>
<tr><td>일 시</td><td colspan="3"></td><td>장 소</td><td></td></tr>
<tr><td rowspan="2">참석사항</td><td>재적위원</td><td>참석</td><td>불참</td><td colspan="2" rowspan="2">(참석위원)</td></tr>
<tr><td></td><td></td><td></td></tr>
<tr><td>안 건</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 심의내용

○ 의결사항</td></tr>
</table>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10호 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 결 내 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의견 있을 경우 기재)
위원장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위 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9. 13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 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6 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① 교육감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3조(특별휴가) 별표3의 「출산」 란중 일수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 정 조 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① ~ ③ (생략) <신 설>	제6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각급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토요일휴무제) ①교육감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②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td><td>② 토요일휴무제----------
----
----------.</td></tr>
<tr><td>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table><tr><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tr><td>3월이상 6월미만</td><td>4</td></tr><tr><td>6월이상 1년미만</td><td>7</td></tr><tr><td>1년이상 2년미만</td><td>10</td></tr><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3</td></tr><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6</td></tr><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9</td></tr><tr><td>5년이상 6년미만</td><td>22</td></tr><tr><td>6년이상</td><td>23</td></tr></table></td><td>제18조(연가일수) ①
----------.
<table><tr><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tr><td>----------</td><td>3</td></tr><tr><td>----------</td><td>6</td></tr><tr><td>----------</td><td>9</td></tr><tr><td>----------</td><td>12</td></tr><tr><td>----------</td><td>14</td></tr><tr><td>----------</td><td>17</td></tr><tr><td>----------</td><td>20</td></tr><tr><td>-------</td><td>21</td></tr></table></td></tr>
<tr><td>② ~ ③ (생략)</td><td>② ~ ③ (현행과 같음)</td></tr>
<tr><td>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tr><td>출산</td><td>배우자</td><td>1</td></tr></table></td><td>제23조(특별휴가) ①

【별표3】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tr><td>출산</td><td>-----</td><td>3</td></tr></table></td></tr>
</table>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비밀엄수	○ <신설>	○ 제4조의2(비밀엄수)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당직및비상근무	○ <신설>	○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근무시간	○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근무시간	○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 토요일휴무제	○ 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각급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감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연가일수	○ 근무년한에 따라 (4일~23일)	○ 근무년한에 따라 (3~21일)
○ 출산휴가	○ 배우자 (1일)	○ 배우자 (3일)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9. 13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②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실장, 농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④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출자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도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9. 13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5호 및 제6호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호 중 “제46조”를 “제18조”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도지사 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도지사”로 한다.

제5항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보증재단“이라한다)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보증재단“이라한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마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호 가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으로 한다.

제2항 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예수 및 출연)“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11조 중 “융자심의위원회”를 “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목 중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기금운영계획, 자금지원계획,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 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제2조(정의) 3. "구조개선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5. "공장용지임대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01.3.5> 9.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5.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6.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9..... ..... 제18조에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설치)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제3조(기금의 설치)②..... 3.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등)①기금은 도지사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⑤기금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한다)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3.5〉	제4조(기금의관리·운용등)①.....도지사 ..... ⑤.....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제6조(기금지원 사업)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 마.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설립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신설 2001.3.5> 2. 시장재개발 지원사업 가.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제6조(기금지원 사업) 1. ..... 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2. ..... 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

현 행	개 정 안
② 기금관리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각목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호 내지 제5호 ....
제8조(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제3조제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기금관리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②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자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 ②.....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기금관리자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1. 3. 5〉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 기금심의위원회의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⑤〈생략〉 ⑥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사업별 융자심의 소위원 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기금운영계획, 자금지원계획,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심의위원회..... ..... ②~⑤〈생략〉 ⑥〈 삭 제 〉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4. 9. 13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하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담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하천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①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

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가 6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천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징수의 위임) ①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경상북도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부과된 점용료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 및 하천부속물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하천등 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table>
<tr><th>구 분</th><th>산 정 기 준</th></tr>
<tr><td></td><td>
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 5톤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2) 5톤이하 유선
<table>
<tr><th>지역등급</th><th>동 력 선</th><th>무 동 력 선</th></tr>
<tr><td>갑 지</td><td>월액 100,000원</td><td>월액 50,000원</td></tr>
<tr><td>을 지</td><td>월액 60,000원</td><td>월액 30,000원</td></tr>
<tr><td>병 지</td><td>월액 20,000원</td><td>월액 10,000원</td></tr>
</table>
※ 5톤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수송선
50톤이하 월액 40,000원
50톤초과 100톤이하 월액 50,000원
100톤초과 200톤이하 월액 70,000원
200톤초과 300톤이하 월액 90,000원
300톤초과 400톤이하 월액 110,000원
※ 400톤초과시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
(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td></tr>
<tr><td>4. 지하의 유수채취</td><td>제3항(유수의 점용)의 기준을 준용한다.</td></tr>
<tr><td>5. 토석·사력의 채취</td><td>
가. 하천의 경우 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td></tr>
</table>

구 분	산 정 기 준
6.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항(토석·사력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토지의 점용)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토지가격의 5/100
8.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 일 경우에는 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하천에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하여 적용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
2.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때	100%
•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1) 50% (2)
•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때	(3) 30% (4)

【별표 3】

점용료등의 조정산정 (제4조 관련)

전년대비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10/100＋ (증가율－10/100)×3/10] }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13/100＋ (증가율－20/100)×1/10]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16/100＋ (증가율－50/100)×6/100] }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19/100＋ (증가율－100/100)×3/100] }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22/100＋ (증가율－200/100)×1/100] }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동의안 : 1건】

○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4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1. 제안이유

○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은 '94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7:3)형태로 자금을 조성하여 道에서 집행하는 장기저리 자금으로써 중소기업체로부터 선호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반면 정책자금의 금리는 변동이 없어 자금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금리(3.5%)가 낮은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175억원을 차입하고 업체 조기상환금 등 자체여유자금으로 금리(4.9%)가 높은 '03,'04국비차입금을 조기상환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해줌으로써 창업 및 시설투자가 확대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2004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금리가 낮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75억원을 차입하여 '04국비차입금 조기상환하고, 대출업체로부터 조기상환 받은 151억원과 자체여유자금 등으로 '03국비차입금 196억원 조기상환하며, 또한 순세계잉여금 276억원 등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에 편성하여 사용코자 함.

○ 세입현황 : 60,261백만원(이월금 27,618, 융자금회수 15,143,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7,500)

○ 세출현황 : 60,261백만원(차입금 조기상환 37,100, 다음연도 이월금 23,161)

3.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1) 기금명칭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운전자금, 유통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

(2) 설치근거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3) 설치목적 :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내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함.

(4) 설치년도 : 1982년(1996. 8. 8 전문개정)

나. 기금조성 및 운용

(1) 2004년 기금운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증 감	비 고
중소기업육성기금	199,598	139,337	60,261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128,068	67,807	60,261	
운전자금	54,135	54,135	0	
유통업경쟁력강화사업자금	17,395	17,395	0	

(2) 재원조성 : 정부융자금 및 도·시군출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기타 기금운용수익금 등

(3) 지원기준

구 분	대출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융자한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자금	• 연리 5.7% (변동) ※ 벤처자금은 3%	• 시설자금 : 8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3년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공장부지매입 및 건축비,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	• 업체당 11억원 (시설 8, 운전3)
운전자금	• 일반대출 금리에서 3% 이자 보전	• 1년거치 일시 상환	•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영 안정자금	• 일반업체 : 3억원 이내 • 우수업체 : 5억원 이내
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 연리 4.58% (변동)	• 시장재개발 : 15년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시장시설개선 등 : 8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 시장재개발 : 40억원 이내 • 임시시장설치 : 5억원 이내 • 시장시설개선 : 10억원이내 • 공동창고설치 : 8억원이내 • 점포시설개선 : 1억원이내

(4) 지원대상 : 경상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중소유통업자) 및 관련조합 및 단체

4.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증 감	항 목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증 감
합 계	199,597,950	139,337,042	60,260,908	**합 계**	199,597,950	139,337,042	60,260,908
전년도 이월금	112,168,481	84,550,503	27,617,978	**융자금**	58,000,000	58,000,000	
출연금	9,000,000	9,000,000		**차입금 상 환**	63,848,853	26,748,853	37,100,000
차입금	35,000,000	17,500,000	17,500,000	· 원금	60,704,800	23,604,800	37,100,000
융자금 회 수	40,130,332	24,987,402	15,142,930	· 이자	3,144,053	3,144,053	
· 원금	33,635,138	18,492,208	15,142,930	**이 차 보 전**	3,500,000	3,500,000	
· 이자	6,495,194	6,495,194		**다 음 년 도 이월금**	74,249,097	51,088,189	23,160,908
적립금 이 자	3,299,137	3,299,137		**기 타**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당초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64,597,950	121,837,042	42,760,908	
220 임시적 세외수입	154,803,619	112,042,711	42,760,908	
222 순세계잉여금	112,168,481	84,550,503	27,617,978	
222-01 순세계잉여금	112,168,481	84,550,503	27,617,978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경정(46,291,923)-기정(18,673,945) = 27,617,978
226 융자금원금수입	33,635,138	18,492,208	15,142,930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3,635,138	18,492,208	15,142,930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경정(32,190,558)-기정(17,047,628) = 15,142,930
700 지방채	35,000,000	17,500,000	17,500,000	
710 국내차입금	35,000,000	17,500,000	17,500,000	
713 지역개발기금	35,000,000	17,500,000	17,500,000	
713-01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17,500,000	0	17,500,000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경정(17,500,000)-기정(0) = 17,500,000
세입 합계	**199,597,950**	**139,337,042**	**60,260,908**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예산항목	예산액	당초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3000 경제개발비	199,597,950	139,337,042	60,260,908	
3200 지역경제개발비	199,597,950	139,337,042	60,260,908	
3210 경제통상진흥	199,597,950	139,337,042	60,260,908	
3211 중소기업육성관리	182,202,672	121,941,764	60,260,908	
200사업예산	108,247,016	71,147,016	37,100,000	
200자체사업	108,247,016	71,147,016	37,100,000	
601차입금원금	50,978,800	13,878,800	37,100,000	
	50,978,800	13,878,800	37,100,000	04) 기타국내차입금상환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경정(50,978,800)-기정(13,878,800) = 37,100,000
400 예비비등	73,955,656	50,794,748	23,160,908	
420 기타	73,955,656	50,794,748	23,160,908	
706 기타내부거래	73,955,656	50,794,748	23,160,908	03)적립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 • 경정(23,320,632)-기정(159,724) = 23,160,908
세 출 합 계	**199,597,950**	**139,337,042**	**60,260,908**	

【건의안 : 2건】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시한연장대정부건의안

○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적용시한 연장 대정부 건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04. 8. 31
발 의 자 : 채희영 의원외 13인

1. 주 문

문경폐광지역개발의 근거가 되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이 200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경우, 특별법상 각종 지원혜택 중단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한 투자분위기가 위축되어 그동안 정부가 투자한 폐광지역개발사업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시한 연장 건의를 정부 및 국회 등 에 요청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문경지역은 과거 80년대 중반까지 32개탄광에서 7천여명의 근로자가 년간 300만톤(전국의 12%)의 석탄을 생산, 국가경제에 기여했으나 현재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모두 폐광되고 산자수명했던 산천의 훼손과 300여명의 규폐 환자만 남았으며,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 (161천명 ⇒ 85천명, 50% 감)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일로에 있는바

○ 정부에서, 석탄산업사양화로 인하여 쇠퇴해 가는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문경지역을 포함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대체산업육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및 각종 제도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적용시한이 200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각종 지원혜택의 중단과 특별법령상 특혜와 정선 카지노이익금을 폐광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 어렵게 마련한 투자분위기가 그 탄력을 잃게 되고,

▸ 이미 유치한 제조업과 민자사업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여

▸ 결국, 그동안 투자한 폐광지역개발사업비(6천여 억원)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와 함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게 될 것임.

○ 이제 막 탄력을 받은 폐광지역개발에 양질의 민자가 중단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미 유치한 제조업과 민자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별법령상 각종 지원의 지속적인 수혜와 아울러 강원도 정선 메인카지노 개장과 이익금 배분율 상향조정(2005년부터 10%⇒20%)에 의한 본격적인 배당을 통해 카지노이익금을 폐광지역개발에 안정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10년간) 연장을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코자 함.**

3. 건의안 : 별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시한 연장 대정부 건의안

□ 우리도 문경지역은

○ 과거 80년대 중반까지 32개탄광에서 7천여명의 근로자가 년간 300만톤(전국의 12%)의 석탄을 생산, 국가경제에 기여하였으나, 현재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모두 폐광되고 산자수명했던 산천의 훼손과 300여명의 규폐 환자만 남았으며,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161천명⇒85천명, 50% 감)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일로에 있음.

□ 정부에서는

○ 석탄산업사양화로 인하여 쇠퇴해 가는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문경지역을 포함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대체산업육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및 각종 제도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폐광지역개발은

○ 개발초기의 IMF에 따른 국내·외 투자여건 악화로 민자유치가 미진하여 현재 계획된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 그간 대체산업기반을 계획대로 꾸준히 조성해 왔고 투자여건의 호전과 민관합작 법인설립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모델 개발로 민자유치에 탄력과 가시적 성과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2005. 12. 31로 그 시한이 만료될 경우

○지역균형개발적 측면에서 고려된 각종 지원혜택의 중단과 규제 사항에 대한 특례적용 등 특별법령상 특혜와 정선 카지노이익금의 폐광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며

○어렵게 마련한 호조의 민자유치 분위기가 그 탄력을 잃게되고, 이미 유치한 제조업과 민자사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정부가 그동안 투자한 폐광지역개발사업비(6천여 억원)는 예산낭비와 함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의 효과성 기대는 곤란할 것임.

□ 건의안

○이제 막 탄력을 받은 폐광지역개발에 양질의 민자가 중단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대체산업기반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이미 유치한 제조업 및 민자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별법령상 각종 지원과 혜택을 유지하면서

○강원도 정선 메인카지노 개장 등 시설확충과 2005년부터 이익금 배분율 상향에 의하여 증대되는 카지노이익금이 폐광지역간 균형 개발에 안정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 2005년으로 만료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건의함.

2004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

〈자료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적용시한 연장에 대한 내용

□ 특별법 개요

○ 제　　정 : 1995. 12. 29 법률 제5089호

○ 적용시한 : 『이 법은 2005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 주요내용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타법령상 규제 및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제처리 특례 적용
  - 시행자 지정, 생태·자연도 1등급에 대한 개발, 관광진흥법 적용, 영향평가, 산림법 적용,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의제.
-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 민자유치사업의 (재정 등) 지원
- 카지노이익금 일정액을 폐광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토록 명시.
-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지원
-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교부세 지원의 확대, 조세의 감면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공사에의 출자
- 폐광지구내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등

□ 기관·단체 의견

○ 상 공 인 : 특별법 적용기한 연장건의 (영주상공회의소, '04.3)

○ 시민단체 : 특별법 적용기한 연장건의 (지역시민단체 연합·道)

○ 집 행 부 : 지금까지의 폐광지역개발이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적용기한연장 등 특별법개정을 산업자원부에 2차례 건의.

〈자료 #2〉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정선 카지노이익금 배분>

강원(정선)지역에 한정 허가된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여타 폐광지역에 균등 배분 - 폐광지역 균형개발 재원으로 활용

□ 기금조성

○ 재 원 : 강원도(정선) 카지노 이익금중 문경지역 배분액

• 규 정 : 카지노 이익금을 일정기간 폐광지역개발에 사용

• 조 성 : '00~04년까지 법인세전 이익금의 10%·'05이후는 20%이내

※ 기금운용권자 : 강원도지사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운영조례)

○ 용 도 : 폐광지구 개발계획에 누락된 대체산업기반사업 보완

• 교육·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환경개선·보건위생·후생복지 등

○ 기금배분

[단위:백만원,(배분율,%)]

구 분	총매출	경상이익	배 분 금 액				
			계	강 원	보 령	화 순	문 경
00년 정산	90,951	58,030	5,803 (100%)	4,647 (80.08)	324 (5.58)	352 (6.07)	480 (8.27)
01년 정산	462,019	317,514	31,751 (100%)	23,820 (75.02)	2,632 (8.29)	1,502 (4.73)	3,797 (11.96)
02년 정산	476,061	314,900	31,490 (100%)	23,576 (74.87)	2,614 (8.30)	1,496 (4.75)	3,804 (12.08)

※ '03년분 배분예상 : 40억원정도 ☞ 메인카지노 개장 : '02년10월

□ 사업추진 상황 (前년도 카지노정산금을 재원으로 익년도에 추진)

○ '00년 실적 : 신기동(주평역~노인회관) 도로확포장 - 300m.

○ '01~03년 : 청소년수련원 건립 (부지 22,970, 건평 5,500㎡)

〈자료 #3〉

개촉 및 폐광지구개발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총　　괄 : 56 건, 1,659,655백만원(예산 26%, 민자74%)

(단위:백만원)

건수	합계	국비						지방비	민 자
		소계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문광부		
56	1,659,655	225,856	79,990	22,771	57,185	53,000	12,910	200,158	1,233,641

○ 사업기간 : 1996 ~ 2005년 (10년간)

□ 2004년 폐광지구사업계획 (산자부 소관)

구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9개소		11,914	9,530	1,192	1,192	
계속 사업	소하천 정비	죽문천 외2	L = 2㎞	1,213	970	121	122	
	영강하천정비	가은 갈전	L = 0.5㎞	125	100	13	12	
	마성~가은간도로	가은~마성	L= 6.9㎞	2,075	1,660	207	208	
	진남~불정간도로	마성 신현	교량 150m	294	235	30	29	
	가은~완장간도로	가은읍	L=6.0㎞	2,500	2,000	250	250	
	가은상수도확장	가은읍	4천톤/일	1,625	1,300	162	163	
	문경온천~진안간도로	상리~진안	L= 2.4㎞	2,713	2,170	272	271	
신규 사업	마성~호계간도로	마성~호계	L=2.5㎞	869	695	87	87	
	우로~선암간도로	호계면	L=3.0㎞	500	400	50	50	

☞ 2005년까지 산자부 지원계획 800억원 중
2003년까지 609억원(76%) 지원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2004년 9 월 일
제 안 자: 이정백 의원외 인

1. 주 문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등으로 인해 현재 거센 시장개방의 압력에 직면하여 있음에도 현재의 정부는 농산물대외개방 관련 협상과정과 관련 농업정책에서 농업의 보호를 위한 철저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없어 이에 농산물 대외개방 관련 협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농업정책의 혁신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임.

2. 제안이유

가. 1994년의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이후 농업구조조정이 시행되었으나 농촌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나. 현 정부는 7만 쌀 전업농가구 육성과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추진하는 등의 농정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으나 실행방안과 재원의 조달이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임.

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등으로 인한 농업시장의 추가개방과 관세상한제의 도입은 농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라.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후 시설포도, 복숭아 등 과수품목에 대한 농민들의 폐원신청이 봇물 터지듯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쥐꼬리만한 보상금마저 주지 못하는 형편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음.

마. 더욱이 농산물개방에 대비한다는 농지법개정안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은 농민을 고통에 몰아넣는 동시에 농업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있음.

바. 이에 정부는 농산물 대외개방 관련한 협상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쌀 관세화유예와 쌀 추가개방의 저지, 식량자급계획의 법제화, 농지법 개혁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의 전면철회, 목표소득지지제도의 도입과 직접지불제 확대시행, 농협법의 개정 및 농협개혁위원회의 설치, 농가부채해결정책 및 농업경영회생자금제도 시행,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 정책화, 쌀 개방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의 실시 방안 강구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임.

3. 건의내용 : 별 첨

농산물 대외개방 관련 농업정책 혁신촉구 건의안

농업과 농촌은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양식이다. 또한 역사이며 문화이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거센 시장개방의 압력에 직면하여 있다. 특히 목전에 두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관련 협상 그리고 한·칠레 FTA이후 싱가포르, 일본 등과 이어지는 FTA 협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은 시장지향적 무역자유화의 바람 앞에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최대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994년의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이후 무려 70조원의 농업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하였지만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지금의 시점에도 농촌의 상황은 그 참담함이 이를 데 없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농업은 조금도 진전되지 못한 채 후퇴만 거듭해왔다. 또한 현 정부는 쌀 전업농 7만 가구를 2010년까지 육성하고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추진하는 농정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으나 실행방안과 재원조달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마저도 현재 의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일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기본 골격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국내농업시장의 추가개방은 불가피하며 특히 쌀마저 관세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곧 대한민국 쌀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또한 관세 및 보조금 삭감으로 인하여 현재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참깨, 마늘, 옥수수 등 100여 품목에 대한 관세가 대폭 삭감되면 이는 대한민국의 농민은 물론 국민의 숨통을 조이는 일에 다름 아니다. 실제 한-칠레 FTA 체결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포도, 복숭아 등 과수품목에 대한 농민들의

폐원신청이 봇물터지듯 이루어지고 있어 농림부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쥐꼬리만한 보상금도 못줄 형편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면서 이미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추곡수매가격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되도록 하여 농민을 더욱 고통 속에 밀어 넣고 있다. 또한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뿌리 채 뒤흔드는 농지법개정안은 아예 농지투기를 합법적으로 조장하고 나아가 농업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시장개방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도하개발아젠다 세부원칙 협상에서 농업시장개방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속되는 협상과정을 통해 최소한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세상한 설정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는 협상과정과 관련 농업정책에서 농업의 보호를 위한 철저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음은 참으로 애석하고 원통한 일이다.

이제 분명한 사실은 농업을 전적으로 희생시키면서 국가전체의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어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없이는 선진국에 절대 진입할 수 없다. 농촌이 못사는 선진국은 없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회생을 통하여 국민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건의한다.

첫째, 대외개방 관련 DDA협상, FTA협상,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등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반드시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고 쌀 추가개방을 저지하라.

둘째, 농업과 국가식량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식량자급계획을 법제화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하라.

셋째, 농업인을 고통 속에 몰아넣을 농지법개혁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

넷째, 농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목표소득지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직접지불제를 확대 시행하라.

다섯째, 경제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하고 농림부 내에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

여섯째,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획기적 정책마련과 농업경영회생자금제도를 계획대로 집행하라.

일곱째, 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농업이 전체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토대임을 자각하는 국민적 인식전환을 정책화하라.

여덟째, 쌀 개방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2004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원일동

【결의안 : 2건】

○ 태권도공원경주유치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4년 8월 26
발 의 자 : 이 달 의원외 11인

1. 주 문

경주는 태권도의 발상지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태권도공원」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하여 경주시민과 300만 경북도민, 경상북도의회가 하나 되어 효과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유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며,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코자 함.

2. 발의 이유

가. 경주는 태권도의 발상지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이 빼어남.

- 태권도의 역사는 화랑도의 역사
- 태권도 역사를 입증하는 석굴암의 금강역사상을 비롯한 29점외 국보급 문화재 밀집 현존

나.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비용 저렴하고 용이함

- 관광자원화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지역
- 저비용 고효율의 단지조성 가능지역

다.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망으로 접근 용이

라. 태권도 역사 체험이 가능한 순례코스 기확보

3. 참고사항

- 태권도공원 조성계획 및 당위성, 유적 등

4. 결의안 : 별첨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결의안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지구촌 159개국 5천만 세계태권도인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문화관광과 연계한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하여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국·내외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태권도는 신라시대 화랑도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기본무술로서 경상북도 경주는 신라천년의 고도이며 태권도의 효시요, 발상지로서 전국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태권도의 발상지를 입증하는 29점의 국보급 현존 문화재와 많은 고증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경주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10대 유적도시이며 한국문화를 대변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자원화에 다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지역임을 물론,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망으로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본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단지조성이 가능한 태권도공원 조성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경상북도가 지난 2000년 3월 유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고 동년 4월에 태권도공원유치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하여 온힘을 쏟아 왔음은 물론, 우리도 의회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새롭게 인식하고 2004년 정부의 태권도공원 사업추진 재개 방침에 따라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촉구를 위하여 범도민적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고 있다.

이에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태권도공원이 우리 경상

북도 경주에 유치되면 태권도 인구의 저변 확대 등 범도민적으로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300만 도민의 염원인 태권도공원이 경주에 유치될 때까지 범도민 유치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2. 우리는 태권도 홍보대사로서 전 국민과 지구촌 5천만 태권도인에게 태권도의 정통성과 종주국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3. 참여정부는 태권도의 발상지인 경주가 태권도공원 조성의 최적지이므로 태권도공원 조성부지는 반드시 경주로 조기 확정하라.

2004. 9. 13.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4. 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2004년 9월 13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되는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안이유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하반기에 심사해야 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안과 2005년도 상반기 중 심사해야 할 예산안 및 결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내 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전체 15명으로 구성하며, 각 상임위원회 추천 2명(단 행정사회위원회는 1명)과 의장 추천 4명으로 한다.

○ 활동기간은 2004년 9월 13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

구 분	추 천 의 원 명 단	비고
계	15명	
의장추천	장찬식의원 (영주), 김석호의원 (구미), 이상효의원 (경주), 한혜련의원 (영천)	
기 획	권경호의원 (영양), 권종연의원 (안동)	
행정사회	방대선의원 (성주)	
교육환경	권준택의원 (칠곡), 박종욱의원 (청송)	
농 수 산	손만덕의원 (군위), 신영호의원 (의성)	
산업관광	김희문의원 (봉화), 임원식의원 (울진)	
건설소방	김정자의원 (울진), 이현준의원 (예천)	